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案)
<p>제2조(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다만, 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면제대상)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사회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다만, 그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시설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2-5호 (생략) (신 설)</p>	<p>1. 현행과 같음. 2-5호(현행과 같음) 6. 도서관 진홍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p>

· 서울特別市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

1992년 9월 17일

市民保健委員會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 8월 11일

麻浦區廳長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1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

('92.9.17)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사업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 기준 마련

나. 주요골자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대상자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 2) 전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4)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 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3. 전문 위원 겸 토보고의 요지
 (전문 위원 김건재)
- 1) 동조례(안)은 제1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3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은 보건소법(법률 제4355호, 1991년 3월 8일) 및 의료 보호 법 시행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10.10)의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 2) 제3조 제2항의 신설은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생활 보호법 제36조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 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서울特別市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제출 년월일 : 1992년 8월 11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 이유
 ○ 보건소법(법률 제4355호, 1991.3.8) 및 의료 보호법 시행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83호, 1991.10.10)의 전문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진료 사업 중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 기준 마련

2. 주요 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자
 1. 응급 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 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 접종
 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4.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 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안 제3조 제2항)
 3. 관련 법규

○ 보건소법 제8조

 - 제8조(수수료 등) ①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의료 보호법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 제3조(보호 대상자의 구분) ①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대상자는 1종 보호 대상자, 2종 보호 대상자 및 의료 부조 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 한다.

○ 전염병 예방법 제47조

 - 제47조(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군이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군이 부담 한다.
 1. 예방 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 원, 격리 병사,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
 3. 제24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소 또는 진료비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 의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 군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 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 군에서 실시하는 쥐, 벌레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9.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기타 시, 군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

- 제36조(보호비용의 부담구분) 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도가 직접 행하는 보호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도가 부담한다.
 2.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도가 부담한다.
 3.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이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5조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이 부담한다.
 4.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 또는 군이 행하는 보호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35조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의 부담범위는 다음과 같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2조 제1호

- 제22조(비용부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겸진비용

서울特別市麻浦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이 改正한다.

第1條 中 “第6條” 를 “第8條”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증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수료의 면제)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황색(1종보호대상자) 및 녹색(2종보호대상자), 청색(의료부조대상자)의료보호수첩 소지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증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증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다음 「페이지」에 계속)